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5.(화)	담당부서	자원안보정책과
담당과장	최형기 과장 (044-203-5240)	담 당 자	원중필 사무관 (044-203-5252)

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.9만원 인상지원

- 총 79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87.8만가구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**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**하기 위해, **'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.9만원 인상**(8.2% 인상)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지원대상 : 87.8만 가구 / 지원기간 : '21.10~'22.4
** 가구당 평균 0.9만원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: 79억원

○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**평균 지원액은 10.9만원에서 11.8만원으로 0.9만원 증가**하였으며, **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(수)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**

<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>

구 분		1인 가구		2인 가구		3인 가구		4인이상 가구	
변경 전	여름	96,500	7,000	136,500	10,000	170,500	15,000	191,000	15,000
	겨울		89,500		126,500		155,500		176,000
변경 후	**여름**	**103,500**	7,000	**146,500**	10,000	**184,500**	15,000	**209,500**	15,000
	겨울		**96,500**		**136,500**		**169,500**		**194,500**

□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**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**을 구입할 수 있도록 **동·하절기 냉·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**으로,

○ 지원대상은 **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** 중 **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 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있는 세대**로 **총 87.8만 가구**이다.

○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**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**하며, **사용기간 내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로 결제**하거나 **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**받을 수 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**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**을 오는 **2월 28일까지 연장**하고 **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**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**지속 홍보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**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와 **에너지바우처 콜센터**(☎1600-3190) 또는 **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**(www.energyv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【붙 임】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원중필 사무관(044-203-52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**

□ (개요)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□ (지원대상) 「소득기준」과 「세대원특성기준」을 **모두 충족**하는 세대

○ **소득기준**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**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**

○ **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**이 다음 **어느 하나에 해당**

- **노인** (주민등록기준 1956.12.31 이전 출생자)
- **영유아** (주민등록기준 2015.01.01 이후 출생자)
- **장애인**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**임산부**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**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**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)
- **한부모가족**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)
- **소년소녀가정**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)

□ (지원금액)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

구 분		1인 가구		2인 가구		3인 가구		4인이상 가구	
변경 전	여름	96,500	7,000	136,500	10,000	170,500	15,000	191,000	15,000
	겨울		89,500		126,500		155,500		176,000
변경 후	**여름**	**103,500**	7,000	**146,500**	10,000	**184,500**	15,000	**209,500**	15,000
	겨울		**96,500**		**136,500**		**169,500**		**194,500**

*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**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

□ (지원절차)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생성·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*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,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
□ (신청 및 문의) **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

* 복지로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 가능

□ (신청기간) **2021년 5월 21일 ~ 2022년 2월 28일**

□ (사용기간)

○ 여름 바우처 : 2021년 7월 1일 ~ 2021년 9월 30일

○ 겨울 바우처 : 2021년 10월 6일 ~ 2022년 4월 30일

*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**발행**되는 고지서에서 차감,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**결제완료** 필요